

청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가단554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진, 김수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시내

변론 종결 2024. 11. 22.

판결 선고 2024. 12.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9. 7. 5. 체결된 신탁원부 변경계약을 284,756,5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4,756,5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9. 7. 5. 체결된 신탁원부 변경계약을

494,402,69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4,402,6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C은 2019. 1. 28.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증여받고 2019. 1. 31.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2016. 1. 29. 위 토지 지상의 위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원고는 2019. 2. 21. C에게 33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9. 4.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와 C은 2019. 8. 12. 위 대여금의 이자를 연 10%로, 변제기를 2021. 8. 12.로 각 변경하고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정하는 내용으로 당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변경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변경된 위 내용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E 작성 증서 2019년제505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 C은 2019. 3. 28.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 H 조합[지점(이하 'H조합'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F(수탁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 신탁등기(건물 : 신탁원부 J, 토지 : 신탁원부 K)를 마쳐주었다. 등기된 신탁원부상 우선수익권자는 H조합, 우선수익한도금액은 1,560,000,000원이었다. H조합은 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C에게 1,300,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992,694,400원이었다.

○ 이후 C(신탁자)은 2019. 7. 5. F(수탁자), H조합(1순위우선수익권자) 및 피고, L과 사이에,

기존담보신탁에 공동2순위우선수익권자로 피고(우선수익한도금액 1,792,920,000원), L(우선수익한도금액 1,320,000,000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탁원부변경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이라 한다), 등기된 신탁원부에 2019. 7. 8. 위 변경사항을 기재하였다.

○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C은 F에 위탁자로서 소유권이전/신탁해두었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이후 H조합의 처분요청으로 2020. 4. 7.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L이 2020. 5. 1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20.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매각대금에서 공동2순위우선수익권자 피고는 539,375,861원을, 같은 L은 397,104,242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판단(제척기간 도과 여부)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년 말경 또는 늦어도 2021. 10. 21.경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한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21. 10. 21.경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원고가 그 무렵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그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나 'C이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으로 처분한 재산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점' 등까지 알았는지에 관하여는, 을가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소가 2023. 3.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데, 그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인 2022. 3. 17. 이전에 원고가 C의 위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성립시기, 내용, 액수 등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위 채권의 내용은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1)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원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변제기인 2021. 8. 12.까지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와 그 다음날부터 2024. 6. 14.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으로서, 494,402,694원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면서, 투자의 경우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배당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으로서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룬다. 그러나, 원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처분문서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다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투자유인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발생 원인에 원고의 과실도 있으므로 최대 50%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여금 채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고 C에 대한 '사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배배상채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선택 영역에 있는 것이다(변론주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C은 2019.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9. 2. 12. 피고가 지정하는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이미 있었던 것이고, 원고가 사해행위로 지목한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은 단지 피고가 C의 요청에 따라 담보의 방식을 변경해 준 것에 불과하여 이른바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위 양도담보와 신탁변경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후 성립한 채권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2. C으로부터 M에게로 '2019.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3. 2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과정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C과 피고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및 이후 담보방식의 변경을 위한 양도담보의 합의해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2019. 3. 22. C에게 복귀하였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속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은 그 후인 2019. 7. 5. 체결되어 C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이다.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들²⁾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C이 원고에게 2019. 2. 22.부터 2019. 12. 16.까지 아래와 같이 총 75,431,803원을 변제하였다면서 피보전채권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1	2019-02-26	1,500,000	인정(이자로 수령)
2	2019-03-21	24,000,000	C 부탁으로 결제해 준 카드대금을 입금 받은 것
3	2019-03-27	1,000,000	C 부탁으로 결제해 준 카드대금을 입금 받은 것
4	2019-04-05	2,500,000	인정(이자로 수령)
5	2019-04-23	12,000,000	C 부탁으로 결제해 준 카드대금을 입금 받은 것
6	2019-05-09	2,500,000	인정(이자로 수령)

1	2019-02-26	1,500,000	인정(이자로 수령)
7	2019-05-21	5,570,000	C 부탁으로 결제해 준 카드대금을 입금 받은 것
8	2019-06-10	2,500,000	인정(이자로 수령)
9	2019-06-17	1,100,000	C 부탁으로 N에게 송금해 준 돈을 입금 받은 것
10	2019-06-21	3,550,000	C 부탁으로 결제해 준 카드대금을 입금 받은 것
11	2019-07-22	3,511,803	C 부탁으로 결제해 준 카드대금을 입금 받은 것
12	2019-08-21	1,500,000	C 부탁으로 결제해 준 카드대금을 입금 받은 것
13	2019-10-09	3,000,000	C 부탁으로 결제해 준 카드대금을 입금 받은 것
14	2019-10-16	2,000,000	C 부탁으로 결제해 준 카드대금을 입금 받은 것
15	2019-10-30	2,000,000	C 부탁으로 결제해 준 카드대금을 입금 받은 것
16	2019-12-16	7,200,000	인정(이자로 수령)
합계	75,431,803		

원고는 위 내역표 중 순번 1, 4, 6, 8, 16번 기재 각 돈을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이자로 수령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바,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피보전채권으로 "원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4. 6. 14.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을 주장하고 있고, 위 내역표의 순번 1, 4, 6, 8, 16번 기재 각 돈은 2020. 1. 14.까지 발생한 이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위 가.항에서 인정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서 위 순번 1, 4, 6, 8, 16번 기재 각 돈을 뺄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는 위 내역표 중 순번 2, 3, 5, 7, 9 내지 15번 기재 각 돈은 원고가 C의 부탁으로 C 대신 결제해 준 카드대금 또는 N에게 송금해 준 돈의 반환채권(즉, 별도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갑 제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가.항에서 인정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서 위 순번 2, 3, 5, 7, 9 내지 15번 기재 각 돈 역시 뺄 것이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인정 여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 당시 C은 F에 위탁자로서 소유권이전/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외에 피고 및 L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데 따른 거액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으로 피고 및 L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H조합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신탁원부상 1순위우선수익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3) 을 피고 및 L에게 담보로 제공(공동2순위우선수익권을 부여)하는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바, 이는 C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 또는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C은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은 C이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자신의 요식업, 유통업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 변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 당시에 피고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 아니라, 2018. 8월부터 2019. 1월 사이에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은 C이 신규 자금 융통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에 해당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과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으로부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할 것이다.

이에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됨으로써 신탁재산처분이 완료된 사실, 위 공매절차에서 2순위공동우선수익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539,375,861원, 같은 L에게 배당된 금액은 397,104,242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 당시에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부분(1순위우선수익권자 O조합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액은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워진 공매절차에서의 매각시점에는 적어도 936,480,103원(= 539,375,861원 + 397,104,242원)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게 된 이상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494,402,694원이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위와 같이 936,480,103원 정도이므로, 두 금액 중 적은 494,402,694원(취소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취소될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피고와 L 2인인데 원고는 그 중 피고만을 상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바⁴⁾,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 취소에 따른 피고와 L의 각 원상회복의무가 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와 같이 중첩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자신이 수익한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무를 감당하면 될 것이다.⁵⁾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범위는, 위 인정의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인 494,402,694원에 '피고의 수익 부분 ÷ 피고와 L 2인의 수익 부분 합계'의 수치를 곱하여 산정되는 284,756,587원(= 494,402,694원 × 539,375,861원/936,480,103원, 원 미만 버림)으로 된다.

6. 결론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은 284,756,5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84,756,5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현룡

별지

1)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2.부터 2021. 8. 12.까지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이자, 지연손해금은 2020. 1. 15.부터 2024. 6. 14.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것만 계산하여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청구하였다(2024. 6. 3.자 준비서면 및 동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3) 그 가액은,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앞서 본 감정평가액 1,992,694,400원에서 1순위우선수익한도금액 1,560,000,000원을 뺀 432,694,400원이 된다.

4) 원고는 L도 이 사건의 피고로 삼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었는데, 원고와 L 사이에서는 2023. 10. 16. 조정이 성립되었다(2023머59934호). 피고와 L은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분리하여 조정성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L 사이의 소송결과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결과가 합일확정될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와 L 사이에 성립된 조정의 내용은 이 사건에서 참고하지 않는다.

5) 이 사건은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일한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 하나의 사해행위로 2명의 수익자가 수익한 경우에, 그 중 어느 한 수익자가 다른 수익자의

수익 부분까지 취소 및 가액배상을 감당해야 한다는 법리는 없다.